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파워e단기채증권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
   1) 종류A-E, 종류C-E, 종류C-P, 종류C-P2 신설
   2) 신탁업자보수율,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인하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1월 13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A-E BL292 종류C-E BL294 종류C-P BL297 종류C-P2 BL299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3. 종류 A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5. 종류 C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 수익증권 7. 종류 C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8. 종류 C-P2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

		투자자 전용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2항 <추가>	제2항 3. 종류 A-E 수익증권 5. 종류 C-E수익증권 7. 종류 C-P 수익증권 8. 종류 C-P2 수익증권
제39조 (보수)	제3항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 <추가>	제3항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 [종류A-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8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3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 [종류 C-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8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67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3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 [종류 C-P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8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34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3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 [종류 C-P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8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3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

제40조 (판매수수료)	제2항 <추가>	제2항 3. 종류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05%이내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-E, C-E, C-P, C-P2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A-E BL292 종류C-E BL294 종류C-P BL297 종류 C-P2 BL299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-E, C-E, C-P, C-P2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A-E BL292 종류C-E BL294 종류C-P BL297 종류 C-P2 BL299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 년 1 월 13 일 - 종류 A-E, C-E, C-P, C-P2 수익증권 신설 - 신탁업자보수율,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인하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
<table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<종류 A-E, C-E, C-P, C-P2 신설></td>
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 A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-P</td><td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-P2</td><td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나. 종류형 구조
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선취판매수수료</th><th>환매수수료</th><th>총보수</th><th>판매보수</th></tr>
<tr><td>A</td><td>납입금액의 0.1%이내</td><td rowspan="6">없음</td><td>연0.1866%</td><td>연0.1000%</td></tr>
<tr><td>A2</td><td>납입금액의 0.2%이내</td><td>연0.0966%</td><td>연0.0100%</td></tr>
<tr><td>C</td><td rowspan="3">없 음</td><td>연0.2000%</td><td>연0.1134%</td></tr>
<tr><td>C-F</td><td>연0.1066%</td><td>연0.0200%</td></tr>
<tr><td>W</td><td>연0.0866%</td><td>연0.000%</td></tr>
</table></td>
<td>나. 종류형 구조
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선취판매수수료</th><th>환매수수료</th><th>총보수</th><th>판매보수</th></tr>
<tr><td>A</td><td>납입금액의 0.1%이내</td><td rowspan="9">없음</td><td>연1.1736%</td><td>연0.1000%</td></tr>
<tr><td>A2</td><td>납입금액의 0.2%이내</td><td>연0.0836%</td><td>연0.0100%</td></tr>
<tr><td>A-E</td><td>납입금액의 0.05%이내</td><td>연0.1236%</td><td>연0.0500%</td></tr>
<tr><td>C</td><td rowspan="5">없 음</td><td>연0.1870%</td><td>연0.1134%</td></tr>
<tr><td>C-E</td><td>연0.1303%</td><td>연0.0567%</td></tr>
<tr><td>C-F</td><td>연0.0936%</td><td>연0.0200%</td></tr>
<tr><td>C-P</td><td>연0.1770%</td><td>연0.1034%</td></tr>
<tr><td>C-P2</td><td>연0.1736%</td><td>연0.1000%</td></tr>
<tr><td>W</td><td>연0.0736%</td><td>연0.000%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A-E, C-E, C-P, C-P2 신설></td>
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종류 A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-P</td><td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/table>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종류 C-P2</td><td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A-E, C-E, C-P, C-P2 신설>

주)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종류 A 는 납입금액의 0.10%이내, 종류 A2 는 납입금액의 0.20%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
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4">지급비율</th></tr>
<tr><th>종류 A-E</th><th>종류 C-E</th><th>종류 C-P</th><th>종류 C-P2</th></tr>
<tr><td>선취판매수수료</td><td>납입금액의 0.05% 이내㈜</td><td colspan="3">없음</td></tr>
<tr><td>후취판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4">해당사항 없음</td></tr>
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4">환매수수료 없음</td></tr>
</table>

주)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종류 A 는 납입금액의 0.10%이내, 종류 A2 는 납입금액의 0.20%이내, 종류 A-E 는 납입금액의 0.05%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
</td></tr>
</table>

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모든 종류 수익증권> 신탁업자보수 : 0.020% 일반사무관리보수 : 0.018% <종류 A-E, C-E, C-P, C-P2 신설>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모든 종류 수익증권> 신탁업자보수 : 0.013% 일반사무관리보수 : 0.012% [종류A-E]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0486% 판매회사보수율 : 0.05% 신탁업자보수율 : 0.013%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2% 보수합계 : 0.1236% [종류 C-E]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0486% 판매회사보수율 : 0.0567% 신탁업자보수율 : 0.013%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2% 보수합계 : 0.1303% [종류 C-P]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0486% 판매회사보수율 : 0.1034% 신탁업자보수율 : 0.013%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2% 보수합계 : 0.1770% [종류 C-P2]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0486% 판매회사보수율 : 0.100% 신탁업자보수율 : 0.013%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2% 보수합계 : 0.1736%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
<table>
<tr><td></td><td><종류 A-E, C-E, C-P, C-P2 신설></td><td>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 A-E</td><td>18</td><td>45</td><td>75</td><td>164</td></tr>
<tr><td>종류 C-E</td><td>13</td><td>42</td><td>74</td><td>168</td></tr>
<tr><td>종류 C-P</td><td>18</td><td>57</td><td>100</td><td>228</td></tr>
<tr><td>종류 C-P2</td><td>18</td><td>56</td><td>98</td><td>224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간이투자설명서]

<table>
<tr><th>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</td><td>
보수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(Class)</th><th>종류A</th><th>종류 C</th><th>종류 W</th></tr>
<tr><td rowspan="6">보수(연, %)</td><td>판매</td><td>0.1000%</td><td>0.1134%</td><td>0.0000%</td></tr>
<tr><td>운용</td><td>0.0486%</td><td>0.0486%</td><td>0.0486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</td><td>0.0200%</td><td>0.0200%</td><td>0.0200%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</td><td>0.0180%</td><td>0.0180%</td><td>0.0180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0.0666%</td><td>0.0005%</td></tr>
<tr><td>~~총보수~~ 비용</td><td>0.1866%</td><td>0.2666%</td><td>0.0871%</td></tr>
</table>
※ 주석사항
· 종류 A2, 종류 C-F의 보수 및 비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/td><td>
보수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(Class)</th><th>종류A</th><th>종류 C</th><th>종류 W</th></tr>
<tr><td rowspan="6">보수(연, %)</td><td>판매</td><td>0.1000%</td><td>0.1134%</td><td>0.0000%</td></tr>
<tr><td>운용</td><td>0.0486%</td><td>0.0486%</td><td>0.0486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</td><td>0.0130%</td><td>0.0130%</td><td>0.0130%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</td><td>0.0120%</td><td>0.0120%</td><td>0.0120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0.0666%</td><td>0.0005%</td></tr>
<tr><td>~~총보수~~ 비용</td><td>0.1736%</td><td>0.2536%</td><td>0.0741%</td></tr>
</table>
※ 주석사항
· 종류 A2, 종류 C-F, 종류 A-E, 종류 C-E, 종류 C-P 및 종류 C-P2의 보수 및 비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/td></tr>
<tr><td>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</td><td>3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3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